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6회 제2차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5. 11.

박 종 길 의원

# 제안 설명서

제안자 : 박 종 길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 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**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.

**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**

-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, 안 제2조에는 기후대응기금의 설치, 안 제3조에는 기후대응기금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는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는 기후대응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해, 안 제7조에는 기후대응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8조에는 기후대응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.

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**

-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## 【박종길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109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4.

발 의 자 : 박종길, 손범구, 이진환  
정순옥, 임미연,

## 1. 제안이유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조성(안 제2조 ~ 안 제3조)
- 라. 기후대응기금의 용도(안 제4조)
- 마. 기후대응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5조)
- 바. 기후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(안 제6조)
- 사.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(안 제7조)
- 아. 기후대응기금의 존속기한(안 제8조)

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
- 나. 비용추계: 비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설치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대응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2.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
3. 환경관련법에 따른 과태료, 징수교부금
4.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·운영
2.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사업

3.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
4.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·교체 사업
5.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
6.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
7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·홍보
8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, 연구·조사 또는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
9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·단체·법인 및 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
10. 그 밖에 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.

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③ 구청장은 기금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금고에 예치한다.

제6조(회계관계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: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
2. 기금출납원: 기금 업무 담당 팀장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후

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3.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.

제8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 관계 법령 】

## 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
제69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
2.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3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5.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·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
6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(豫受金)
7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
8.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·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

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4조(기금의 지출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② 기금운용관(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)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